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69
----------	-------

발의연월일 : 2026. 1. 15.

발 의 자 : 김정재 · 추경호 · 서일준
박충권 · 김승수 · 김미애
최수진 · 정점식 · 김성원
강명구 · 박덕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까지 상향하거나 0.5배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지역별 교통량 증감이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나, 지자체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조정 이후 특별한

검토 없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지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여 검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등의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른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 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등의 개선 조 치를 하여야 한다.</u>